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단5780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 종결 2019. 5. 3

판결 선고 2019. 5. 2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70,776원과 그중 176,702,369원에 대하여 2018.7. 1.부터 2018 . 11. 19. 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모'라 한다) 사이의 석유류상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7. 6. 20.부터 2019. 6. 19.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시 원고에게 보험금을 변상하되, 그 지급이 지연될 경우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공시 연체이율은 보험금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다. 피고 회사가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1. 19. E에 보험 금으로 196,894,32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합계 20,191,951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8. 6. 30. 기준 구상금 채무는 원금 176,702,369원(= 196,894,320원 - 20,191,951원), 연체이자 7,668,407원, 합계 184,370,776원이다.

【인정근거】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70,776원과 그중 원금 176,702,36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D이 F로부터 기망당하여 형식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형식상 서명이필요하다고 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D 스스로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 D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D이 주장하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원고의 직원이 보증보험약정서를 받을 당시 피고 D에게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의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사업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지영